

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4-57호

『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4년 12월 4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시지정문화재의 현상, 관리, 수리, 전승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존 상황 등에 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인천의 전통 문화유산을 보존 전승하고
- 나. 문화재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유·무형 문화재의 가치 제고를 통하여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에 이바지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지정문화재의 보존·관리의 주체로서 반복되는 용어에 대하여 “소유자등”의 약어 사용을 규정함.(안 제29조, 제31조, 제40조)
- 나. 손실보상에 정기조사 및 직권조사 포함(안 제37조)
- 다. 시지정문화재의 현상, 관리, 수리, 전승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존 상황 등에 관한 정기조사를 실시함(안 제41조)
- 라. 시지정문화재의 현상, 관리, 수리, 그 밖의 환경보존 상황 등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함(안 제41조의2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7일(월)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(참조 :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24, 팩스 032-440-8764, 이메일 ysi3312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관리단체에”를 “관리단체(이하 “소유자등”이라 한다)에”로 한다.

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소유자·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는”을 “소유자등은”으로 한다.

제3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제41조 및 제41조의2에 따른 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
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소유자·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”를 각각 “소유자등이”로 하고, 제3항 중 “소유자·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”을 “소유자등은”으로 한다.

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1조(정기조사) ① 시장은 시지정문화재나 시문화재자료(이하 “시지정문화재등”이라 한다)의 현상, 관리, 수리, 전승의 실태,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 등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.

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문화재의 소유자등에게 문화재의 공개, 현황자료의 제출, 문화재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, 발굴, 장애물의 제거,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. 다만,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뒤에는 소유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⑥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·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⑦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·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시지정문화재등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.

1. 시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
2. 시지정문화재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
3.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인정과 그 해제
4. 시지정문화재등의 수리 및 복구
5. 시지정문화재등의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·금지 또는 시설의 설

치·제거 및 이전

6. 그 밖에 시지정문화재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1조의2(직권에 의한 조사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시지정문화재등의 현상·관리·수리 그 밖에 환경보존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, 조사의 협조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범위,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.

제42조 중 “제41조”를 “제41조의2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9조(관리를 위한 지시) ① 시장은 시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사항을 소유자·보유자·관리자 또는 <u>관리단체에</u> 지시할 수 있다.	제29조(관리를 위한 지시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 <u>관리단체(이하 “소유자등”이라 한다)에</u> -----
1. ~ 3. <생략>	1. ~ 3. <현행과 같음>
제31조(신고사항) 시지정문화재의 <u>소유자·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는</u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 및 경과 등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, 제2호의 경우에는 신·구 소유자 연서로서 하여야 하며, 시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가족·상속자 또는 이수자가 신고하여야 한다.	제31조(신고사항) ----- <u>소유자등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~ 9. <생략>	1. ~ 9. <현행과 같음>
제37조(손실 보상) <생략> 1. ~ 2. <생략> 3. <u>제41조에 따른 직권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</u>	제37조(손실 보상) <현행과 같음> 1. ~ 2. <현행과 같음> 3. <u>제41조 및 제41조의2에 따른 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</u>
제40조(관람료의 징수) ① 시지정	제40조(관람료의 징수) ① -----

문화재의 소유자·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·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.

③ 시지정문화재의 소유자·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람료를 해당 문화재의 보호·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제41조(직권에 의한 조사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시지정문화재의 현상·관리·수리 그 밖에 환경보존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·보유자·관리자나 관리단체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측량·발굴·장애

----- 소유자등이 -----

② -----
----- 소유자등이 -----

③ ----- 소유자등
은 -----

제41조(정기조사) ① 시장은 시지정문화재나 시문화재자료(이하 “시지정문화재등”이라 한다)의 현상, 관리, 수리, 전승의 실태, 그 밖의 환경보존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등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

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상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. 다만,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는 소유자·보유자·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
있다.

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문화재의 소유자등에게 문화재의 공개, 현황자료의 제출, 문화재 소재 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, 발굴, 장애물의 제거,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. 다만, 해 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는 소유자등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⑥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·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⑦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·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시지정문화재등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.

1. 시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

<신설> 제42조(준용) 제16조, 제17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재	<u>해제</u> 2. <u>시지정문화재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</u> 3. <u>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인정과 그 해제</u> 4. <u>시지정문화재등의 수리 및 복구</u> 5. <u>시지정문화재등의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·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·제거 및 이전</u> 6. <u>그 밖에 시지정문화재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</u> 제41조의2(직권에 의한 조사) ① <u>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시지정문화재등의 현상·관리·수리 그 밖에 환경보존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</u> ② <u>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, 조사의 협조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범위,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4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.</u> 제42조(준용) ----- -----
---	---

로 지정 또는 가 지정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와 시지정문 화재로 가 지정된 문화재의 조 사에 관하여 <u>제41조</u>를 준용한 다.	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41조의2</u>----- ----
--	--

[별첨 1]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☐ 문화재보호법 - 제44조(정기조사) - 제74조(준용규정)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관계법령 발췌사항

【문화재보호법】

제44조(정기조사)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, 관리, 수리, 전승(傳承)의 실태,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, 보유자, 관리자,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.

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, 보유자, 관리자, 관리단체에 문화재의 공개, 현황자료의 제출, 문화재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, 발굴, 장애물의 제거,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. 다만,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뒤에는 소유자, 보유자, 관리자,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·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.

1. 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

2.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

3.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인정과 그 해제
4. 문화재의 수리 및 복구
5. 문화재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·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·제거 및 이전
6.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74조(준용규정) ① 시·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·제2항을 준용한다.

② 시·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7조, 제31조제1항·제4항,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, 제35조제1항, 제36조, 제37조, 제40조, 제41조제3항,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문화재청장"은 "시·도지사"로, "대통령령"은 "시·도 조례"로, "국가"는 "지방자치단체"로 본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(개정안 제41조 관련)

- 시 지정문화재 1개소당 전문가 3인이 참여조사 할 경우
 - 177개소 × 3인 × 100,000원 = 53,100,000원 소요
-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경우
 - 3년 또는 5년마다 시행으로 인한 용역산출로 1억원 미만 예상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『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』 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 : 문화복지위원회 황홍구 의원